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제정 2025. 02. 07

시행 2025. 03. 04

I. 취지

이 설명서는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68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 66 조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 7 조의 3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 4-17 조의 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이하 '상품')의 매매(영 제 66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는 제외)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II. 최선집행의무(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의무) 관련 주요 용어

1. 통합호가와 주문유형

① 통합호가란 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전체 집행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한 호가입니다.

※ 집행시장은 상품 매매가 가능한 시장을 의미하며, 집행시장에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대체거래소, 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있습니다

② 주문 유형

- 1)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이란,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처럼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Order Book) 내 기존 물량 (호가 잔량)을 이용하여 즉시 체결되는 주문입니다.
- 2)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이란,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Order Book)내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으로, 지정가 주문(Limit Order, 투자자가 대상 증권의 가격과 수량 등을 지정하게 되는 주문)중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최선의 거래조건 관련 용어 (영 §66 의 2② 관련)

① 상품의 가격

- 1) 최선의 거래조건을 집행하기 위한 '상품의 가격'이란 투자자의 상품매매를 위한 통합호가창에서의 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 2) 회사는 공개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공개호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②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 1)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란 주문집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 중 주문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는 명시적 비용을 의미하며 이하 '거래비용'이라 합니다.
- 2) 암묵적 비용이란 사전적으로 요율이 확정된 명시적 거래비용 외의 비용(시장충격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③ ‘총비용’이란 매수주문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수금액으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의 합으로 합니다.

※ 매수시 총비용 = [(주당 가격 × 매수 수량) + 거래비용]

※ 거래비용은 투자자 주문시점에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회사의 수수료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실제 납부하게 될 비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④ ‘총대가’란 매도주문시 투자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도금액으로 매도금액과 거래비용의 차로 합니다.

※ 매도시 총대가 = [(주당 가격 × 매도 수량) - 거래비용]

※ 거래비용은 투자자 주문시점에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회사의 수수료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실제 납부하게 될 비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⑤ ‘매매체결 가능성’이란 주문이 집행되어 실제로 매매체결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회사별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최선주문집행을 위한 주문분배시스템(SOR)

① ‘SOR(Smart Order Routing)’이란 복수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유리한 집행 시장으로 자동 전송하는 주문분배시스템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SOR을 통한 주문’을 ‘스마트주문’으로 표기합니다.

III. 최선집행 세부 기준

1. 적용 대상 증권의 범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① 최선집행 일반 원칙

1)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은 총비용(매수의 경우) 또는 총대가(매도의 경우)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주문을 전송하며, 양 집행시장으로 주문을 분할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은 자방(‘자기 주문 방향’을 의미. 매수주문시 매수호가 있는 방향, 매도주문시 매도호가 있는 방향)의 호가잔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매체결 가능성이 우선되도록 주문을 전송합니다.

3) 기존 물량 체결 주문 및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의 최우선 판단 조건이 동일한 경우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한국거래소로 주문을 전송합니다.

② 최선집행 세부 기준

- 1) 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할 때마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신규주문, 정정주문 모두 포함)을 배분할 집행시장을 판단합니다.
- 2) 회사가 주문을 배분하는 집행시장에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있습니다.
- 3) 매매거래 시간대별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집행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매매 거래 시간	한국거래소 매매체결방식	넥스트레이드 매매체결방식	최선집행기준에 의한 집행시장 선택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08:00~08:30	-	접속 매매	넥스트레이드
	08:30~08:50	단일가 매매	접속 매매	넥스트레이드
넥스트레이드 휴장	08:50~09:00	단일가 매매	휴장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09:00~09:00:30	접속 매매	휴장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09:00~15:20	접속 매매	접속 매매	스마트 주문에 따라 판단된 시장 ①한국거래소 또는 ②넥스트레이드 또는 ③양쪽 집행시장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	09:00:30~15:20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15:20~15:30	단일가 매매	휴장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15:30~15:40	-	단일가 매매	넥스트레이드
	15:40~20:00	-	접속 매매	넥스트레이드

IV.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예외

1. 최선집행기준 적용 일반 예외

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 ① 투자자로부터 집행방법에 관한 별도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 지시 받은 집행 방법(이하 ‘주문거래소 설정’)
 - 1)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영 §66 의 2② 단서)

회사는 상품 매매의 집행에 관한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Opt-Out)에는 투자자의 지시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집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 투자자 별도지시 방법 및 유효기간

(가) 투자자는 주문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문거래소 설정 기간 만료일은 신청일 포함 90 일이며, 만료일 다음 영업일부터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처리됩니다.

(나) 회사는 주문거래소 설정에 대한 만료일 안내를 위해 총 3 회(만기일 전 1 영업일 발송 포함) 이상

통지합니다.

- (다) 투자자가 주문거래소 설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처리됩니다.
- (라) 투자자가 설정한 주문거래소 설정 기간내라 하더라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지시의 효력이 만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유의사항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의해 주문이 처리될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의 최선집행 기준에 따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집행 : 당해 계약 등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정하는 방법
- ③ 거래 약관 또는 계약 등에 있어서 집행 방법을 특정하는 거래
 - 1) 국내주식/ETF 온라인 적립식 매수서비스
 - 2) 주식/ETF 적립식 매수서비스등
- ④ 기타 예외사항 : 별첨 참조

2. 최선집행기준 적용 특별 예외

- ① 집행시장 또는 회사의 시스템 장애(SOR 장애 포함),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주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그 시점에서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합니다.
- ② SOR 장애 발생시 스마트 주문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한국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단, 한국거래소 정규장 마감 시간 이후에는 넥스트레이드로 주문 집행합니다.) 또한, 기존 미체결 주문 중 넥스트레이드 거래가능 종목은 정정 주문이 불가하고 전부 취소 주문만 가능합니다.
- ③ 어느 하나의 집행시장에서 장애 발생 시에는 거래가 가능한 집행시장으로 주문합니다.

3. 결과 책임 미귀속

회사의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가 요청한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절차상의 책임입니다. 회사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문시점에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그 주문 결과의 책임은 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V. 그 외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사항

1. 최선집행기준 점검 및 공표 의무 (영 §66의 2③, ⑤)

- ① 회사는 3개월마다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의 내용('Ⅲ.2.②' 참조)을 점검하고, 이 기준의 내용이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법 제 68 조제 1 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공표하거나 또는 ①항에 따라 그 변경 사실(변경 이유 포함)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모두 활용합니다.

- 1) 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설명서 교부 의무 (법 §68의④, 영 §66의2⑥)

회사는 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는 경우 전자우편, SMS(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 전자문서(매체 팝업 등) 등의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이하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1.①)에 따라 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이 기재된 설명서를 말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설명서 내용 중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이외의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3. 증빙 제공 의무 (영 §66의2④, 규정 §4-17①)

회사가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서면 교부
 - 2) 전자우편
- ②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 1)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 2)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 3)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③ 투자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②항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기록·유지 의무 (영 §66의2⑦, 규정 §4-17②)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10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VI. 기타사항

1. 최선집행기준 설명서의 효력 발생

설명서는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개설일(`25.3.4.예정)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개설일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시장 개설일부터 적용됩니다.

2. 최선집행기준 설명서의 수정 및 보완

설명서는 시장 상황,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별 첨】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사항

아래의 주문은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로 주문 집행하며, 회사가 집행시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구분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 이유
자동응답시스템(ARS) 주문	자동응답시스템 구조상 복수 집행시장으로 주문집행시 주문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용 고객의 오입력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거래소로 주문 집행하고, 추후 투자자의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정입니다.
DMA(Direct Market Acces) 주문	DMA 주문은 회사 주문 중개 없이 투자자가 주문을 직접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집행시장을 지정해서 전송하지 않는 한, 한국거래소로 주문 집행합니다
제휴매체 주문	제휴매체 주문은 매체 정책상 한국거래소로 주문 집행하고 있으며, 최선집행기준 적용 여부는 추후 제휴매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 예정입니다. ※ 제휴매체 : 증권플러스, 자율주행서비스, RA(Robo-Advisor) 전용주문, 스타뱅킹모바일웹(주식매매), KB Pay, BaaS 플랫폼, 기업스타뱅킹
주식 호가 주문	주식 호가주문은 빠른 주문을 위해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을 처리하고 있어 복수 집행시장으로의 주문처리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한국거래소로 주문 집행합니다.
서버 자동 주문	서버 자동주문은 시세를 활용한 기술적 지표 조건을 설정한 후 해당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문이 처리되는 자동주문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거래소 시세만 사용하며, 주문도 한국거래소로 집행합니다.
국내주식 예약 주문	국내주식 예약주문은 사전에 한국거래소 시간외종가 또는 장개시전 동시호가에 주문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예약번호 순으로 한국거래소에 주문접수됩니다.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종목별 한도 및 시장 한도로 인해 주문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내주식 예약주문은 한국거래소로 주문 집행합니다.
UNI-K 주문	UNI-K 는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주문 매체입니다. UNI-K 를 통한 알고리즘(TWAP[시간가중평균가격], VWAP(거래량가중평균가격), VOL(거래량 비례 체결)등] 주문은 통합시세 적용이 불가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로 주문 집행합니다.
전산 미개발로 현행 유지 서비스	넥스트레이드 시장 개설일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불가하여 한국거래소로 주문 집행하고, 추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선집행기준 적용예정입니다. ※ 현행 유지 서비스 : 다이렉트인덱싱, 투자자문 PLAZA, FIX 선물대용주문, POMS(투자일임사 전용 주문매체), AMS(투자자문사 전용 주문매체)
서비스 종료 예정 또는 단계적 종료 검토 매체	Mable 미니('25.12.31 예정) Ace